



형사사건도 조정으로 해결한다?!

강 문 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장, 변호사

- I. 형사조정제도 소개
- II. 형사조정제도의 특징
- III. 형사조정위원의 역할 등
- IV. 참고할 만한 조정 사례들
- V. 다른 분쟁해결제도
- VI. 맺음말





형사사건도 조정으로 해결한다?!

1. 형사조정제도 소개

가. 의의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가해자) 및 범죄피해자 간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 형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나. 연혁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오래전부터 판결 외에 민사조정제도가 시행되어 왔는데,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서도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와 합의를 모색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 10년 전부터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 형사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형사조정제도를 사실상 시행하여 오다가 2010. 5.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다. 대상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

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서 회부할 수 있고, 이에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면 비로소 형사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가 형사조정에서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그 외에 형사조정에서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건들에 준하는 사건이다. 주로 중한 범죄보다는 경한 범죄에 속하는 사건들이 형사조정 대상 사건이 된다.

다만,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검사가 형사조정에서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형사조정제도의 특징

형사조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마무리하는 데도 있지만, 나아가 해당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사건까지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 체불을 이유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형사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그 자체에 집행력이 없어 이후 사용자가 약속대로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 사안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근

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사배상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일괄적·실질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III. 형사조정위원의 역할 등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며,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조정위원들은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형사조정위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며 합의 조정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 및 회복,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형사조정위원은 조정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거나 조심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대화 시 말을 끊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추측하여 대화하지 않는다. 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다. 당사자를 따로 분리하여 조정하는 등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며, 동석한 위원 간 의견을 모아 공정하게 진행한다. 조정회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치 않는 등 비밀을 준수한다.

IV. 참고할 만한 조정 사례들

가. 사례 1

(1) 인적사항

을(피의자) : 21세, 남자, 대학생, 휴학 중

갑(피해자) : 42세, 남자, 택시기사

(2) 범죄사실

을은 2014. 1. 어느 날 01:00경 갑이 택시요금 5,760원을 달라고 하자 3,000원만 지불하였다. 이에 갑이 나머지 요금도 요구하자 을은 갑에게 욕을 하였고, 을이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갑이 제지하려 하자 을은 오른손 주먹으로 갑의 왼쪽 이마와 광대뼈를 2회 때렸고, 이에 112에 신고하려는 갑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을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면서도,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고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3) 조정결과

갑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맞아서인지 을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조정위원이 1시간여에 걸쳐 갑을 설득하고, 을은 진정으로 갑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조정위원도 함께 사과한다고 하였더니, 결국은 갑이 을을 용서하고 합의해 주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참고로 갑은 을의 진정한 사과만을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 주었다.

나. 사례 2

(1) 인적사항

을(피의자) : 54세, 여자, 노동

갑(피해자) : 76세, 남자, 농부

(2) 범죄사실

을은 2012. 10. 어느 날 18:15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서 진행하는 갑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조정결과

갑은 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을이 병문안도 오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매우 껄뽀하다고 하면서 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조정위원들 앞에서 갑에게 진정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아울러 150만 원까지 배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갑이 이를 받아들여 상호간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사례 3

(1) 인적사항

을(피의자) : 16세, 여자, 퇴학생

갑(피해자) : 16세, 여자, 고등학생

(2) 범죄사실

을은 여고에서 퇴학당한 자로 갑과 친구 사이인데, 2011. 4. 어느 날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이 을의 친구들에게 막 대한 것에 대하여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갑의 얼굴 부위에 수십 회 가랑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3) 조정결과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갑은 을이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결국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을은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 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위원은 갑을 상대로 소통이 어려웠던 점을 이해시키고 또한 당사자들이 학생신분인 만큼 법적인 처벌보다는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자고 설득하였다. 그 결과, 을은 갑에게 치료비 명목 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형사조정제도가 빛을 발한 전형적인 경우에 속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 층간 소음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에 보도됐던 사례도 여기에 속한다.³⁾

V. 다른 분쟁해결제도

소송과 달리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주적인 방식이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할 수 있다. 즉, 재판(소송)에 가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는데, 이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조선일보』, 2015. 11. 30., 10면, 박상기, “法보다 대화, 층간소음·학교폭력도 마주앉으니 해결”,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5&M=11&D=30&ID=2015113000117 (검색일 : 2016. 2. 2.)

가. 화해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재판외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상 화해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나누어지는데, 재판상 화해에는 법원이 관여하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면 되며, 실무상으로 제소전 화해에 집행력이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제때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나. 조정

조정은 지금까지 주로 민사조정을 의미하는데,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조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사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중재

분쟁에 대한 판단을 법원 아닌 제3자(중재인, 중재기관)에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중재도 여기에 속한다.

중재의 절차와 효력도 대체로 화해나 조정과 같으나, 화해와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화해안이나 조정안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에 비하여, 중재는 일단 중재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의 승낙 유무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하는 제3자의 판단에 당사자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VI. 맺음말

형사사법의 역할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검찰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지만,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에도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형사조정제도는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검찰의 기능을 돕고 강화해 주는 매우 좋은 장치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형사조정제도는 민간인 형사조정위원이 형사사건 처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해결은 물론 보복성 범죄 등 관련 범죄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원만한 대화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범죄의 예방은 물론 당사자 간 앞날의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어느 조정위원이 “재판으로 몇 달을 끌 사건이 당사자들끼리 마주앉아 사과하고 오해를 풀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울분을 토로할 수 있다는 점이 형사조정 의 묘미다”라고 말했듯이 형사조정제도야말로 장점이 많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